

경운대학교 전과(부)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의 전과(부)(학과 및 학부, 전공 간 이동을 말함)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자격) ① 현 소속 학부(과)의 1학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한 자 <개정 2020.03.01.>

②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자

③ 삭제 <2020.03.01.>

제3조(기간) 전과(부)는 해당학년 학기 시작 전 30일전에 허가할 수 있다.

제4조(방법) 전과(부)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,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과(부) 신청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1. 전과(부)신청원 1부

2. 학적부 사본 1부

3. 성적증명서 1부

4. 전과(부)신청사유서

제5조(허가 및 제한사항) ① 전과(부)는 전공학부(과) 단위별 약간 명을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전과(부)는 전공 단위별 입학정원의 80% 범위 안에서 다른 학부(과)로부터의 전과(부)를 허가할 수 있으나, 전입학과(부)에서 전과 여석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. 단, 모집중지학과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격 및 전과의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1.>

③ 전과(부)는 재학 중 2회에 한하고, 주·야 교차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.

<개정 2020.03.01.>

④ 전과(부)는 신청자 수가 희망 학과 수용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전과(부)신청 사유와 성적 심사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⑤ 물리치료학과, 간호학과, 작업치료학과, 치위생학과, 임상병리학과로 전과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0.03.01.>

⑥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(부)를 허가하지 아니한다.

⑦ 학부(과)운영 및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학부(과)를 제한 할 수 있다.

제6조(전과(부) 학생의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) ① 전과(부) 학생의 기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은 아래표의 기준에 의거 인정한다. 다만, 전입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기 이수한 경우 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과목(전공기초,전공선택, 전공필수)으로 인정 한다.

<개정 2020.03.01., 2020.12.01>

이수구분	전과학년	인정학점 범위
교양	전학년	취득학점
디자인 씽킹	전학년	취득학점
전공 기초	2	전과 학과 전공기초 최소이수학점의 1/2 이내
	3	전과 학과 전공기초 최소이수학점의 3/4 이내
	4	전과 학과 전공기초 최소이수학점의 3/4 이내
전공 선택	2	전과 학과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의 1/4 이내
	3	전과 학과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의 1/2 이내
	4	전과 학과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의 3/4 이내
전공 필수	전학년	불인정

② 삭제 <2020.03.01.>

③ 전과(부)한 자는 전출한 학부(과)를 부전공이나 제2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.

제7조(기타) 전과(부)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03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(전과(부) 학생의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)의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0.12.01.>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(전과(부) 학생의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)의 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전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1.10.01.>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